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26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관련 별표 1에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

○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가 적어 현실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안 제3조)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8조)

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1 신설
(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조~제7조, 제9조~15조, 제21조~제2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입법예산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담당(전화:055-225-5373,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dejavu4934@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3
----------	------

발의연월일 : 2022. 4. 8.

발 의 자 : 전홍표·공창섭·권성현·김경수·김상찬·김장하
김종대·김태웅·박성원·백승규·백태현·이찬수
정순욱·주철우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관련 별표 1에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
-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가 적어 현실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안 제3조)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8조)

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1 신설
(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조~제7조, 제9조~15조, 제21조~제2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를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전거이용여건”을 “자전거 이용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자전거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전거이용 여건”을 “자전거 이용여건”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을 “(자전거 전용도로 용도 변경 제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제8조제2항”을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 제2항 및 제3항중 “자전거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소유자”를 “자전거 소유자”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의”를 “자전거 이용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자전거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인센티브)”를 “(혜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센티브를”을 각각 “혜택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
 - 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p><u>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p> <p>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u>자전거주차장</u>, 그 밖</p>	<p><u>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p> <p>제2조(정의) -----</p> <p>1.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p> <p>2. -----<u>자전거 주차장</u>, 전</p>

현행	개정안
<p>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기자전거 충전소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누비자”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p>	<p>4. -----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제3조 <삭제></p>
<p>1. <u>자전거전용도로</u>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p>	
<p>2. <u>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u>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p>	

현행	개정안
<p>3. <u>자전거 전용차로</u>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u>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u></p> <p>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시책을 <u>강구하여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u>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자전거이용 활성화</u>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그 밖에 <u>자전거이용 활성화</u>에 관한 사항 <p>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자전거이용 활성화</u>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p>제4조(시장의 책무)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p> <p>-- <u>자전거 이용자</u>-----</p> <p>-- <u>마련해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 이용여건</u>----- 2. (현행과 같음) 3. <u>자전거 이용</u> ----- 4. ~ 6. (현행과 같음) 7. ----- <u>자전거 이용</u> ----- <p>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p> <p>---- <u>자전거 이용</u>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자전거 이용</u> -----

현행	개정안
<p>권리</p> <p>3. <u>자전거이용</u>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p> <p>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p> <p>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u>자전거이용</u>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u>를 위한 방안</p> <p>4. (생략)</p> <p>③·④ (생략)</p> <p>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u>자전거이용</u>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p>	<p>--</p> <p>3. <u>자전거 이용</u> -----</p> <p>-----</p> <p>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p> <p>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p> <p>-----</p> <p>-----</p> <p>----- <u>자전거 이용</u></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자전거 이용자</u>-----</p> <p>-----</p> <p>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u>자전거 이용여건</u>-----</p> <p>-----</p> <p>-----</p>

현행	개정안
<p><u>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u></p> <p>제9조(<u>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u>)</p> <p>① <u>자전거주차장</u>의 유지관리는 해당 <u>자전거주차장</u>을 설치한 자가 하며, <u>제8조제2항</u>에 따라 설치된 <u>자전거주차장</u>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p> <p>②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u>자전거주차장</u>의 경우 그 관리·운영을 <u>자전거주차장</u>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u>자전거주차장</u>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u>자전거의 주차요금</u>) 제8조</p>	<p>제9조(<u>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u>)</p> <p>① <u>자전거 주차장</u>----- -----<u>자전거 주차장</u>----- -----, <u>제8조</u>----- ----- <u>자전거 주차장</u>----- -----.</p> <p>② ----- <u>자전거 주차장</u> ----- ----- <u>자전거 주차장</u>----- ----- -----.</p> <p>③ <u>자전거 주차장</u> ----- ----- ----- -----.</p> <p>제10조(<u>자전거의 주차요금</u>) ----</p>

현행	개정안
<p>에 따라 설치된 모든 <u>자전거주차장</u>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p>	<p>----- <u>자전거 주차장</u> ----- --.</p>
<p>제11조(<u>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u> 등) ① <u>자전거주차장</u>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u>자전거주차장</u>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자전거주차장</u>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u>자전거소유자</u>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u>판명</u>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p>	<p>제11조(<u>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u> 등) ① <u>자전거 주차장</u> ----- ----- ----- <u>자전거 주차장</u> ----- -----.</p> <p>② <u>자전거 주차장</u>----- ----- ----- <u>자전거 소유자</u>----- ----- <u>밝혀진</u> ----- -----.</p>
<p>제12조(<u>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u> 등) ① (생략)</p> <p>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u>자전거주차장</u>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2조(<u>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u>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자전거 주차장</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u>자전거이용 활성화</u>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3조(위원회의 설치) ----- <u>자전거 이용 활성화</u>----- ----- ----- -----.</p>
<p>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자전거이용</u>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이용</u>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u>자전거이용</u>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생략) 4. <u>자전거이용</u>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생략) 	<p>제14조(위원회의 기능) ----- <u>자전거 이용</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 이용</u> ----- ----- 2. <u>자전거 이용</u> ----- ----- 3. (현행과 같음) 4. <u>자전거 이용</u> ----- ----- 5. (현행과 같음)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생략)</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선출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4장 <u>자전거이용 활성화</u> 시책 <u>추진</u></p>	<p>제4장 <u>자전거 이용 활성화</u> 시책 <u>추진</u></p>
<p>제21조(누비자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u>자전거이용</u>의 편의를 증</p>	<p>제21조(누비자의 관리·운영) ① ----- <u>자전거 이용</u>의 -----</p>

현행	개정안
<p>진하여 <u>자전거이용 활성화</u>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할 수 있다.</p>	<p>----- <u>자전거 이용 활성화</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누비자 터미널의 설치) ① (생략)</p>	<p>제22조(누비자 터미널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제8조제1항</u>에 따라 <u>자전거주차장</u>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누비자 터미널 설치로 <u>자전거주차장</u>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 ----- <u>제8조</u>----- <u>자전거 주차장</u>----- -----<u>자</u> <u>전거 주차장</u>-----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u>자전거주차장</u>을 설치해야하는 자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 받은 누비자 터미널 시설물에 한해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p>	<p>④ ----- ----- <u>자전거 주차장</u>----- ----- -----, ----- ----- ----- -----.</p>
<p>제23조(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u>자전거이용</u>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p>	<p>제23조(자전거의 보험) ① ----- <u>자전거 이용</u> ----- ----- ----- -----</p>

현행	개정안
<p>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u>자전거이용</u>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재정지원) ----- ----- ----- <u>자전거 이용</u> ----- ----- <u>필요한</u> ----- -----.</p>
<p>제25조(<u>인센티브</u>)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u>인센티브</u>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u>인센티브</u>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5조(<u>혜택</u>) ① ----- ----- ----- <u>혜택</u> ----- -----.</p> <p>② ----- ----- <u>혜택</u>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표]</p> <p><u>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제8조 관련)</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u>노상주차장</u>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u>노외주차장</u> 2. <u>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u>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u>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u>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u>

현행	개정안
	<p><u>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u></p> <p>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p> <p>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p> <p>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p> <p>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p> <p>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p> <p>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p> <p>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p> <p><u>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u></p>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최초시행 1995. 7. 6., 제정 1995. 1. 5.)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② 삭제 <2017. 12. 29.>
-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9.>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누비자”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보험”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6. 삭제 <2016. 9. 19.>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이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

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 ②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①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누비자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5.12.28., 2017. 7. 7., 2018. 12. 27.>

1. 창원시의회의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0.6.30.>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제21조(누비자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증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비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다.

- 제22조(누비자 터미널의 설치)** ① 시장은 누비자의 이용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누비자 무인대여소인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누비자를 기부한 기관에 대하여 누비자 터미널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누비자 터미널 설치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를 고려하여 설치규모를 정하되 필요 시 설치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자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 받은 누비자 터미널 시설물에 한해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3]

- 제23조(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6. 9. 19.> [중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19.]
1. 삭제 <2016. 9. 19.>
 2. 삭제 <2016. 9. 19.>
 3. 삭제 <2016. 9. 19.>
-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6. 9. 19.>

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 제2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숙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 ③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896호, 2016.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